

현 행	개 정 (안)
1. 남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를 변동한 때	1. 타 시·도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한 때.
2. 위촉당시 신분을 상실한 때	2. 좌측 2호과 같음.
3.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	3. 좌측 3호과 같음.
4.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직할시 및 구세를 체납한 때	4. 좌측 4호과 같음.
5.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	5. 좌측 5호와 같음.
② (생 락)	② (좌 동)
③ (생 락)	③ (좌 동)

### 부산직할시남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배지의 제작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)** ①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1과 같다.

② 표지의 외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에 “議”자를 표시한다.

③ 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“議”자는 금색,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.

**제3조(의회기의 규격과 모형)**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.

①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,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, 세로 140cm로 하며, 옥내용은 가로 135cm, 세로 90cm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.

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.

④ 깃면의 표지하단 여백에 “부산직할시 남구의회”라 하고 고딕체로 표기한다.

**제4조(개양)**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. 다만,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“후례지”를 부착한다.

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 원편에 게양한다.

**제5조(관리)**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.

**제6조(의회기에 대한 예의)**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.

**제7조(배지제식)** ①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3과 같다.

② 의원 배지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.

**제8조(배지교부)** ① 의원 배지는 제1대 의회는 의원출신 지역구순에 의거 번호순으로 교부하되, 의장은 1번, 부의장은 2번으로 하고 제2대 의회부터는 의원 등록순서에 의거 번호순으로 교부한다.

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, 분실 또는 체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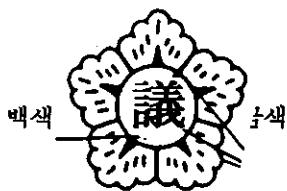
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.

**제9조(배지 폐용 요령)** 배지는 정장 좌측 옷깃에 폐용한다.

## 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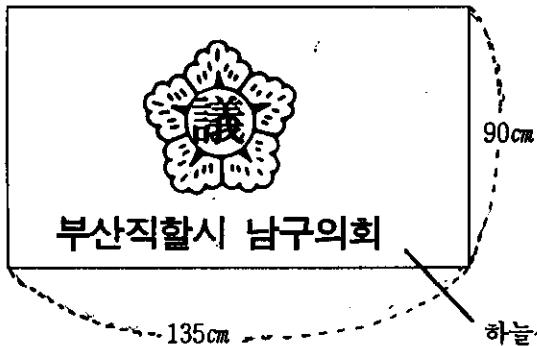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 표지원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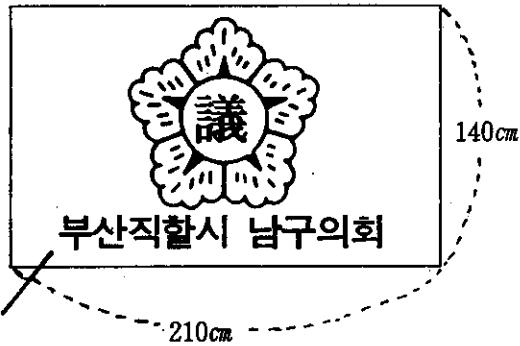


(별표 2) 의회기 모형도

○ 옥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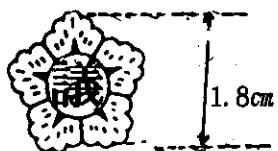


○ 옥외용



(별표 3) 배지 모형도

○ 모 형



○ 규 격

모 형 내 용	규 격
무 궁 화 형	5 支 1.8 cm
화 대 형	5 支 1.4 cm
화 반 원 형	1 1.0 cm
원 자 막	議 0.8 cm

재료 : 18금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